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5. 2. 18.(화)  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-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# 의안 검토보고서

## 검토안건

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 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  
전문위원 이금성

#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8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5. 2. 6.
- 회 부 일 : 2025. 2. 7.

## 2. 제안이유

- 세계인삼산업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, 인삼산업발전을 지속적  
으로 선도하기 위해 '금산 인삼의날'을 정하여 금산군의 공식 기념  
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금산 인삼의날 제정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  - 매년 10월 23일을 '금산 인삼의날'로 정하는 공식적인 근거 마련
  - \* 인삼의날을 '10월 23일'로 정하는 사유
    -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지정한 인삼의날(10월 23일)과 동일한 날짜로 선정(일관성)
    - ② 인삼 수확의 절정기인 10월 중순~하순 기간 중에 지정(상징성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 
관한 특별법」 제30조의2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
○ 기 타

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857)
-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861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2226)
- 입법예고(2025. 1. 24. ~ 2025. 1. 31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계 인삼산업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본 조례에 ‘금산 인삼의날’을 정하여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10월 23일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‘인삼의 날’로 지정한 바 있어 이와는 차별화된, 금산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념행사 추진과 더불어 유명무실한 기획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 행사 추진 시기도 인삼축제와 연계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여론 수렴이 필요해 보이며, 마지막으로 과도한 행사성 경비 지출은 열악한 금산군 예산 사정상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그밖에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